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624

발의연월일: 2025. 1. 17.

발 의 자 : 김상욱 • 박덕흠 • 박준태

한기호 · 강대식 · 이종배

김예지 · 이준석 · 천하람

정성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관련 범죄사건은 2021년 1만 6,153건에서 2023년 2만 7,611으로 170% 급증하는 등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쉽게 마약 등 약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모하였음.

이러한 추세 속에 최근 운전자가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에서는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를 경찰관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 거가 미흡하여 해당 운전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경찰관이 교통 단속 시 필요한 경우 운 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약물 운전에 대 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의2 신설 및 제148조의2제4항 등).

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1항 중 "제45조"를 "제44조의2, 제45조"로 한다.

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4조의2(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운전 금지) ① 자동차등(개인 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노면전차의 운 전자는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마약,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약물(이하 "약 물"이라 한다)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간이시약검사 등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.

-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,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45조 중 "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, 질병 또는 약물(마약,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영향"을 "술에 취한 상태, 제44조의2에 따른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 외에 과로, 질병"으로 한다.

제148조의2제4항 중 "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 한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
- 2.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44조(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제44조(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전 금지) ① 누구든지 술에 취 전 금지) ① -----한 상태에서 자동차등(「건설 기계관리법」 제26조제1항 단 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 기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, 제44조의2, 제45조----제45조, 제47조, 제50조의3, 제9 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),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는 아니 된다. ② ~ ⑤ (생 략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44조의2(약물의 영향을 받는 <u><신</u> 설> 상태에서 운전 금지) ① 자동 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 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「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제2 조에 따른 마약, 대마 및 향정 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약물(이하 "약물"이라 한다)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

<u>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</u> <u>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</u> <u>아니 된다.</u>

-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간이시약검사 등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 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 정의 방법, 절차 등 필요한 사

제45조(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
지) 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, 질병 또는 약물(마약,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48조의2(벌칙) ① ~ ③ (생략)

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 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.

<신 설>

<u>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</u>
제45조(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
ス])
<u>술에</u>
취한 상태, 제44조의2에 따른
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 외에
<u>과로, 질병</u>
제148조의2(벌칙) ① ~ ③ (현행
과 같음)
④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
<u>해당하는</u>
1.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
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
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

	<u> </u>
<u><신 설></u>	2.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
	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
	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
	조의2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
	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
	<u>사람</u>